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458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1. 6. 22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인용 조문을 수정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6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“제1호”를 “가목”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“제1호”를 “가목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영 [별표 1]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.

가.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

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1) 전용주거지역·도시자연공원·근린공원·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(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)와 접한 지역
- 2) 「경관법」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,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

다. 노후·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

역

제6조제3항 중 “제1항에도 불구하고,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”를
“영 [별표 1] 제4호”로 한다.

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</p> <p>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거환경개선구역 (이하 생략) 2.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(이하 생략) <p>〈신 설〉</p>	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영 [별표 1] 제2호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전용주거지역·도시자연공원·근린공원·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(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)와 접한 지역 2) 「경관법」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,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

